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-28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5. 8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구민과 공무원 및 부서의 창의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창의마일리지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창의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구민과 공무원 및 부서의 창의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창의마일리지의 지급 근거 마련
 - ※ 기존 :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」 제46조(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) 준용, 기획재정국장 방침[기획예산과-9486호(2010.1.11)]을 근거로 창의마일리지 지급
- 창의마일리지 종류에 따른 창의마일리지 운영방법 규정
- 창의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구민과 공무원 및 부서에 대해 지급하는 시상금의 지급 근거 마련

3. 조례안

: 따로 붙임

4. 예산조치

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(2011. 3. 22. ~ 4. 11.) 결과 : 의견 없음

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2. 4. 27.)

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
라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호 중 “공무원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로, “구민 및 공무원”을 “국민”으로 한다.

제6조의2 중 “ 구민생활”을 “주민생활”로 한다.

제18조 중 “ 「특허법」 ”을 “ 「발명진흥법」 ”으로 한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창의마일리지제 운영)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활동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자발적 참여를 위해 창의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.
②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활동에 따른 마일리지 점수를 연중 부여하고 관리하며, 제1항의 창의마일리지제 종류에 따른 운영방법은 별표 3과 같다.

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3(창의마일리지 시상) ① 구청장은 창의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구민과 공무원 및 부서에 대하여 구청장표창(상장)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②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마일리지 시상등급은 최우수상, 우수상, 장려상, 노력상으로 구분하고, 부서는 최우수상, 우수상, 장려상으로 구분한다.
③ 제1항의 시상금 지급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르며,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
별표 3과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누적된 창의마일리지 점수는 이 조례에 따른 창의마일리지 점수로 본다.

[별표 3]

창의마일리지제 종류에 따른 운영방법(제22조의2관련)

구 분	운영방법
<p>마포구 소속 공무원 및 부서(동주민센터 포함)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마일리지 부여방법(기준) : 공무원 및 부서별 마일리지 배점표에 따라 부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마일리지 배점표는 구청장 방침에 따름 2. 마일리지 관리 및 동점자(부서) 처리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공무원별, 부서별 구분 관리 나. 동점자(부서) 우선 순위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창의과제 발굴 분야 고득점자 2) 창의활동 분야 고득점자 3) 창의교육 분야 고득점자
<p>그 밖에 각종 창의 제안 제출 및 창의 활동에 참여한 사람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마일리지 부여방법(기준) : 개인 마일리지 배점표에 따라 부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마일리지 배점표는 구청장 방침에 따름 2. 마일리지 관리 및 동점자 처리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개인별 점수부여 및 관리 나. 동점자 우선 순위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단순 민원성 제안보다 '우수창의 제안' 제출한 사람 2) 제안 제출 건수가 높은 사람(같은 경우 전년도 포함)

[별표 4]

창의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 기준표(제22조의3관련)

구 분	시상등급	시상금	비 고
개인 (구민, 공무원)	최우수	20만원 ~ 30만원(상품권)	상장
	우 수	10만원 ~ 20만원(상품권)	"
	장 려	5만원 ~ 10만원(상품권)	"
	노 력	3만원 ~ 5만원(상품권)	"
부서 (과/동)	최우수	30만원 ~ 50만원	상장
	우 수	20만원 ~ 30만원	"
	장 려	10만원 ~ 20만원	"

※ 시상 인원수, 시상등급, 시상금 및 그 외 세부운영규정은 구청장 방침에 따르며, 기 수상자는 같은 연도에 한하여 선정 제외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"아이디어제안"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.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"공모제안"이라 함은 <u>구청장이</u>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<u>구민 및 공무원이</u>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.</p> <p>5. ~ 8. (생략)</p>	<p>제3조(정의)</p> <p>....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</u></p> <p>....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 <u>국민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5. ~ 8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의2(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)</p> <p>① 구청장은 생활공감정책(구의 시책 등에 있어 제도를 조금만 개선하면 <u>구민 생활에</u>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함)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의2(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)</p> <p>①</p> <p>..... <u>주민생활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<p>제18조(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)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「<u>특허법</u>」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「<u>실용신안법</u>」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「<u>디자인보호법</u>」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8조(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) ①</p> <p>.....</p> <p>..... <u>「발명진흥법」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<신설></p>	<p>제22조의2(창의마일리지제 운영)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활동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자발적 참여를 위해 창의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활동에 따른 마일리지 점수를 연중 부여하고 관리하며, 제1항의 창의마일리지제 종류에 따른 운영방법은 별표 3과 같다.</p>
<p><신설></p>	<p>제22조의3(창의마일리지 시상) ① 구청장은 창의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구민과 공무원 및 부서에 대하여 구청장표창(상장)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마일리지 시상 등급은 최우수상, 우수상, 장려상, 노력상으로 구분하고, 부서는 최우수상, 우수상, 장려상으로 구분한다.</p> <p>③ 제1항의 시상금 지급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르며,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</p>